공 개

의안번호	제 141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자본잠식·공시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강화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및 절차 정비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가총액 요건 상향계획 조정 및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

(유가상장 부칙 §2①·§48①9호, 코스닥상장 부칙 §2①·§54①12호)
(유가상장 §47①9호의2·§48①9호의2, 코스닥상장 §53①5호의2·§54①13호)
(유가상장 §48②1호의2·4호, 코스닥상장 §56①12호·17호의2)

나.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제도 정비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코넥스상장 §28, §30, §30조의2)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코넥스상장 §28, §29, §30조의3)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별 지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9호 중 “한다”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호까지”를 “제9호의2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9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제4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를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를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을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0점 이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의나 중과실”을 “고의”로 한다.

9의2. 주가 미달: 제4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

하는 경우

나.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다.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1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제1항제3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50조제2항 중 “사유를”을 “사유, 주가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2의 관리종목지정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를”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제47조제1항제4호”를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로, “매출액 미달 사유”를 “매출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로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제48조제1항제4호”를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1항제4호”로,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제1호의2의 자본전액잠식 사유,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규정 제2342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00억원	종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00억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총액 미달 관련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9호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시 금액 기준은 규정 제2342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4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 방식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가 미달 관련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가 미달 일수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날부터 그 일수를 산정한다.

②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인 경우는 제48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의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조(반기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

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을 합하여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부과받은 벌점의 누계는 그 벌점의 3분의 2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동조제2항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 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9.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신 설>	9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삭 제>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현 행	개 정 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 ---------- ---------.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1. ---------- 제9호의2까지 ----------: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제48조(상장폐지)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 ----------: ---------- ---------- ---------- ---------- ---------- ---------- ---------- ----------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지----------.
가.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삭 제>
나. 5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삭 제>
<신 설>	9의2. 주가 미달: 제4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가.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나.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관리종목 지

현 행	개 정 안
	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신 설>	다.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②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인 경우. 이 경우 제1항제3호 후단을 준용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	4.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현 행	개 정 안
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받은 경우로서 ---------- ---------- ----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가.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0점 이상이 되는 ---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나. ---------- ---------- ----- 고의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① (생 략)	제50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48조제1항제9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 ---------- ---------- ---------- 사유, 주가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2의 관리종목지정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를 ----------.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관리종목지정)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같은 항 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71조(관리종목지정) ① ----------.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 ---------- 매출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상장폐지)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폐지에는 보통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의 규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72조(상장폐지)① ----------. --,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1항제4호 ---------- 사유,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같은 항 제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제1호의2의 자본전액잠식 사유, 같은 항 제2호----------.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②·③ (생 략)
부칙 <제2342호, 2025. 7. 9.>
제4조(시가총액 미달 관련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7조제1항제9호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47조제1항제9호 및 제4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표에 따른 시가총액으로 적용한다.
<table><tr><th>적용기간</th><th>시가총액</th><th><신 설></th></tr><tr><td>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td><td>200억원</td><td><신 설></td></tr><tr><td>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td><td>300억원</td><td><신 설></td></tr></table>
②·③ (생 략)</td><td>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2342호, 2025. 7. 9.>
제4조(시가총액 미달 관련 특례 및 경과조치) ① ----------

----------.
<table><tr><th>적용기간</th><th>시가총액</th><th>비고</th></tr><tr><td>----------
2026년 6월 30일까지</td><td>-----</td><td>종전</td></tr><tr><td>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td><td>-----</td><td>-</td></tr></table>
②·③ (현행과 같음)</td></tr>
</table>

<별 지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을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한다”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전 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54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동안”을 “이내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를 “30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가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가.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나.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다.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7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제72조제1항 단서 중 “발생 사유”를 “발생 사유,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를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사유,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13호의 주가 미달 사유”로 하고, “발생 사유”를 “발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총액 미달 관련 적용례) ①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다음 표에 따른 시가총액으로 적용한다.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종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한다.

④ 제5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 방식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가 미달 관련 적용례) ① 제5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가 미달 일수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날부터 그 일수를 산정한다.

②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인 경우는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의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조(반기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7호의2

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부과받은 벌점의 누계는 그 벌점의 3분의 2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 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①·② (생 략)	제44조(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에----------.
제53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53조(관리종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신 설>	5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현 행	개 정 안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전 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12. ----------: ----------(----------. -----이 항----) 이내에----------30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
가. 3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삭 제>
나. 3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삭 제>
<신 설>	13. 주가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나.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신 설>	다.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57조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 ---------- ---------- ----------

현 행	개 정 안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12. ---------- ---------- ----------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	제72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 ---------- ---------- ----------

현 행	개 정 안
다. 다만, 제53조제1항제1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제53조제1항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 제53조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제53조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 ---------- ---------- --------발생 사유,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제56조제1항제5호의 외부감사법 위반 사유 중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56조제1항제6호의 주된 영업정지 사유, 제56조제1항제9호의 경영권 변동 등 사유, 제56조제1항제15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제56조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는 준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① ---- ---------- ---------- ---------- ---------- -------. ---------- --- ----------제54조제1항제5호의주식분산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사유,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13호의 주가 미달 사유, ---------- ---------- ---------- ----------발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사

현 행	개 정 안
용하지 않는다.	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유--------.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별 지 3>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 부분 중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를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를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각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 각 목”을 “제4호부터 제7호”로 한다.

7의2. 제7호에 따른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외 부분 중 “거래소는”을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로, “관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을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과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7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

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상장폐지의 유예) ①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7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제30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1.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해당하게 된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한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외에 상장폐지의 유예 적용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추가개선기간의 부여)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

우 부여한 추가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28조제1항제7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이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별 첨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7호에 따른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신 설>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의2. (생 략)	7의3. (현행 7호의2와 같음)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

	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4. <각 목 외의 부분 삭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라. (생 략)	4. ~ 7. (현행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③ 제2항제4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4호부터 제7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① 거래소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하는----------.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래소는 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과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① ~ ⑥ (생 략)	제30조(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7호의2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⑧ ---------제7항---------- ---------- ---------- ----------

세칙으로 정한다.	----------.
<신 설>	제30조의2(상장폐지의 유예) ①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7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제30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신 설>	1.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해당하게 된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
<신 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신 설>	3. 제2호에 따른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한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였을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외에 상장폐지의 유예 적용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추가개선기간의 부여)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한 추가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44